

특별침실 사용수칙

○ 목적

수급자 어르신의 존엄성 유지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임종목적 및 시설 내 다른 수급자나 직원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는 정신질환,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이용대상

- ① 의사로부터 전염 또는 감염성의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수급자
- ② 정신질환 등으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(소리지름, 욕하기, 폭행 등)를 통하여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수급자
- ③ 임종을 맞이하거나 임종하여 다른 수급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가 필요한 수급자이다.

○ 이용방법

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특별침실 이용 목적과 기간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뒤 수급자를 특별침실로 이동시켜야 한다. 단, 시설에 임종을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침실로 선 이동조치 후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○ 이용기간
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종료 되었다고 확인한 날까지로 하며, 임종 또는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임종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

○ 청결상태 유지

특별침실은 항상 언제, 어느 상황에서나 특별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청결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소독 방호할 수 있도록 위생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.

○ 사용기록지 작성

특별침실에서 해당 수급자를 케어하는 직원은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를 포함한 소정의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.